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85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김재원 · 김준형 · 서왕진
박은정 · 황운하 · 최민희
신장식 · 한창민 · 강경숙
백선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음악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 각종 공연의 티켓이 매진되는 사례가 늘면서 공연관람이 국민 생활 속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나, 이를 노린 암표거래가 구조화·지능화되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암표 조직은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대리구매 계정 등을 활용해 정상 관람객보다 먼저 티켓을 대량 확보한 뒤 정가의 수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재판매하고 있어, 공연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음.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암표는 매크로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현행 규정만으로는 실효적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제재만으로는 부당이익이 훨씬 큰 암표 조직의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서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암표를 통한 부당이익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금융기관·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암표 조직의 자금흐름과 거래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공정한 공연 티켓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기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법」 제75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3(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u>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u> <u>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u> <u>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u> <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기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u>

<u>제4조의3</u>(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생략)	<u>야 한다.</u> ④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1. <u>과세정보의 사용 목적</u> 2. <u>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u> ⑤ <u>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4조의4</u>(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현행 제4조의3과 같음)
--	---